

유튜브 영상 게재 시 타인의 얼굴에 동물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 모욕에 해당할까요?

〈사건의 개요〉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의 방송영상을 게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가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물음

이렇게, 영상을 게시하면서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 표현한 행위가 모욕에 해당할까요?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한 표현행위에 의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률

형법 제3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심 판결

피해자에게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모욕한 사건(서울중앙법원 2022. 4. 14. 선고 2021노154 판결)

원심은 피고인의 위 행위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1.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모욕죄의 보호법익(=외부적 명예) 및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의 의미 / 상대방의 인격

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닌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된 경우,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에 대하여 판례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2. 모욕의 수단

모욕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중략...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이라 해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습니다.

3.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얼굴을 가리기 위해 동물그림을 사용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해학적으로 표현하여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모욕한 사건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결론

인물의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하여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표현한 행위는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이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을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처/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